##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김주영·강준현·김 현

박상혁 • 박수현 • 박 정

박지혜 • 박홍배 • 복기왕

이수진 · 이학영 · 임호선

전진숙 · 조인철 · 진성준

허성무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
	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
	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
	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
	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
	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
	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
	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